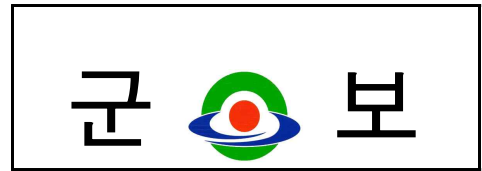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24호 2023. 2. 16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301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예천군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16일

예 천 군 수

1. 규칙명 :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2. 개정이유

불필요한 군보 편찬 내역을 정비하고, 부서 명칭 통일 및 군보 발행형식 및 배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부서 명칭 통일(안 제2조, 제9조, 제11조)

- 주관 부서는 “군보업무 담당부서”로, 주관부서장은 “군보업무 담당부서장”으로 명칭 통일

나. 군보 편찬 구분 현실화(안 제4조)

- 사장된 편찬 내역을 정비하여 현실화

다. 군보 발행형식 및 배부 관련 규정 신설(안 제12조)

- 전자군보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, 종이군보 발행시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도록 규정

4. 개정규칙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홍보소통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nayoonp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홍보소통담당관

3) 팩스 : 054-650-606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홍보소통담당관(전화: 054-650-606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규칙명 :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편찬”을 “편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관하여는”을 “관하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편찬”을 “편집”으로 하고, “기획예산실”을 “군보업무 담당부서”로 한다.

제4조제7호,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기타란

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,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, 제11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기타란) 기타란에는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게재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 중 “당해 실과소장”을 “해당 업무소관 부서장”으로,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군보업무 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9조) 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군보업무 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발행형식 및 배부) ① 군보는 전자군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군보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군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·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종이군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, 읍·면에 배부하여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발행하는 예천군보(이하 “군보”라 한다)의 <u>편찬, 보급, 기타 군보에 관하여</u> 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편집, ----- 관하여</u> ----- -----.
제2조(주관) 군보의 <u>편찬</u> ,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<u>기획예산실</u> 에서 주관한다.	제2조(주관) ----- <u>편집</u> ----- ----- <u>군보업무 담당 부서</u> -----.
제4조(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)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략) <u>7. 상훈란</u> 8. · 9. (생략) <u>10. 사령란</u> <u>11. 휘보란</u> <u><신설></u>	제4조(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8. · 9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12. 기타란</u> <u><삭제></u>
제5조(상훈란) <u>상훈란에는 훈장, 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도지사표창,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, 표창,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.</u>	

제6조(사령란) 사령란에는 9급 이상 군소속직원의 임명, 전출, 휴직,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.

<삭 제>

제7조(휘보란)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

<삭 제>

1. 대통령지시

2. 국무총리지시

3. 행정안전부장관지시

4. 도지사지시

5. 군수지시

6.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7. 군정 주요시책

8. 법령에 의한 면허, 인가, 승인, 단체등록(사회단체, 법인단체, 기타)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9.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,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

10.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

11.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

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<신 설>

제8조(게재의뢰) 군보 게재 의뢰는 당해 실과소장 또는 기관의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의뢰한다.

제9조(조정) 기획예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, 규칙으로 군보 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8조(기타란) 기타란에는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게재한다.

제9조(게재의뢰) -----
-- 해당 업무소관 부서장 ----
----- 군보업무 담당부서장-----.

제11조(조정) 군보업무 담당부서장-----

-----.

제12조(발행형식 및 배부) ① 군보는 전자군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군보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군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·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종이군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, 읍·면에 배부하여 군보를

<u>제10조(군보비치) ① 각 실과소, 읍·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군수, 읍·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제11조 (생 략)</u>	<u>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<삭 제></u> <u>제13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u>
--	---